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경제과)

의안번호	제12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08. 1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5~7조 수정)

-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특정 상황’, ‘대면업무’, ‘구체적인 업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종사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 내용 정비 (안 제7조제2항 수정, 제7조제3항 삭제)

-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과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

다.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부칙 제2조)

-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대행하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7. 7. ~ 7. 27.)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 시행(21. 11. 19.)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재정립

현 행	개 정 안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정의** : 필수업종의 정의를 재정립

- 제2호 “대면업무”를 “필수업무”로 변경
- 제3호 “필수업종”을 “필수노동자¹⁾”로 개정

1)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이다. 다만 누구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할 지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 제4호 “노무제공자”, 제5호 “필수노동자” 등 불필요해진 용어의 정의 규정 삭제
- **안 제5조** : 적용대상을 정의 규정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로 간략히 함.
- **안 제7조 제2항** :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
 - 지원계획의 수립을 ‘수립 할 수 있으며’에서 ‘수립하여야 하며’로 하여 의무조항으로 변경
 - 불필요한 제3항 삭제
- **안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
- **부칙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 **법 제9조 및 제10조2)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개정**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